

청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2가단62706 판결 [추가공사대금 및 간접비 청구]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근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수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0%를 부담하고, 피고가 6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57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6. 23. 피고 대한민국 산하 충북지방조달청장과의 사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청주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청주시 B사업 관급자재’에 관하여 계약금액 554,500,000원, 납품기한 2022. 2. 18.까지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B 사업’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청주시의 물품납기변경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은 최초 2022. 2. 18.에서 2022. 5. 31., 2022. 6. 30., 2022. 7. 31.로 총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지체상금이 면제되었다.

다. 원고는 2022. 7. 29.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22. 8. 1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청주시에게 2022. 4. 18.과 2022. 6. 28. 두 차례의 공문으로 “이 사건 B 사업의 발주처의 물품납기변경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이 변경되었으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다.”라는 이행최고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 청주시(이하 ‘청주시’라고 하고, 피고와 청주시를 통칭하여 이하 ‘피고 측’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C 디자인 수정 및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고지하고 디자인 수정 및 설계변경을 진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차장 공사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고지하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청주시가 2022. 6. 13.경 추가비용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청주시에 추가공사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고 ‘D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C 디자인 변경, ② 설계변경, ③ D주차장 비용 등 추가공사비 138,305,000원(=①29,095,000원+②88,660,000원+③20,5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측

원고는 계약 납기변경 요청을 3차례에 걸쳐 하였을 뿐, 계약금액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원 · 피고 사이에서 디자인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D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공사이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청주시와 사이에 협의서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추가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재 시공된 C의 디자인은 원 · 피고 사이에서 3차례에 걸쳐 변경된 최종디자인과 시스템 구성이 동일한데, 위 시스템 구성은 당초의 시스템 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기능 및 부품이 변경된바, 현재 시공된 C은 원 · 피고가 2021. 6. 2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을 때와는 달리 디자인 및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측의 지시 내지 허락 없이 임의로 설계와 디자인을 변경하여 공기를 연장하고 C을 설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3차례 납기가 연장될 때 작성된 물품납기변경요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당시 이 사건 사업 담당 직원이던 증인 E의 증언은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3차례에 걸쳐 디자인 변경이 있어 왔음에도 C에 사용되는 부품과 그 사양이 변경되고 추가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⑤ 그럼에도 “디자인 변경 또는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원고가 디자인을 몇 개 가져오면 컨펌만 했을 뿐이고, 디자인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디자인이 당초와는 달리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⑥ D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점, ⑦ 주차장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의 담당 팀장이었던 증인 F은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22. 6. 13.경 중단되어 있던 주차장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청주시의 요청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설계 및 디자인과는 다르게 C과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디자인 및 설계를 변경하여 C과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C 디자인 변경, 설계 변경, D주차장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산출한 결과 138,305,000원으로 감정되었다(감정인 G의 감정결과).

다만, 원고가 공사한 C과 주차장에 사용된 부품 대부분은 시중 물가정보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이며 원고의 기술료 등을 적용할 자료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용 산출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추가공사비는 감정금액의 10%를 감액한 124,474,500원(= 138,305,000원×90%)으로 제한한다.

3. 간접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에 따른 간접공사비 80,000,000원 중 적어도 인건비 58,269,600원(인건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계약 납기변경 요청을 3차례에 걸쳐 하였을 뿐, 금액과 납기를 동시에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계약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간접비는 일정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임금, 원료비 등 직접비 이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구체적 항목을 나누어 간접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간접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고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원고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 측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공기연장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상당액이 간접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간접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124,474,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효두

별지